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8

제출년월일 : 1999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개정이유

행정조직개편에 의한 명칭의 변경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주요골자

명칭변경

- 농촌진흥원 → 농업기술원
- 농촌진흥원장 → 농업기술원장
- 진흥원 → 기술원

불합리한 사항 개선·보완

- “검정”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할수 없는 사항이므로 삭제
- 분석 및 검정 → 분석
- 농업기술, 작물, 원예, 축산 → 농작물(안 제2조 제1호·제3호)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근거법령 :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농림부령) 제2조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별표1, 별지제1호서식 내지 별지제3호서식중 “농촌진흥원”을 “농업기술원”으로 한다.

제1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중 “진흥원”을 “기술원”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 제8조, 제11조제1항, 별표1, 별표2,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중 “분석 및 검정”을 “분석”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농업기술, 작물, 원예, 축산”을 “농작물”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중 “진흥원장”을 “기술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중 “농촌진흥원장”을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별지제1호서식 내지 별지제3호서식중 “검정”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명 :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 및검정에관한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농촌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 및 검정(이하“시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시험”이라 함은 농업기술, 작물, 원예 축산등과 관련된 물질 또는 물품의 성질, 능력, 변화 및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 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p> <p>2. (생략)</p> <p>3.“검정”이라 함은 농업용 기자재의 구조, 성능 및 안전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사·측정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시험등의 의뢰) ①시험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시험등을 하고자 하는 대상 물품을 충청북도농촌진흥원의 장(이하“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등에 필요한 대상물품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제 명 : 농업기술원.....및분석</p> <p>제1조(목적)농업 기술원(···“기술원”.....)및분석.....</p> <p>제2조(정의)</p> <p>1.농작물</p> <p>2. (현행과 같음)</p> <p>3. <삭 제></p> <p>제3조(시험등의 의뢰)①.....농업기술원···(..... “기술원장”.....)</p>

1. (생략)

2. 분석 및 검정의뢰의 경우에는 의뢰 신청서를 제출할 때

② (생략)

제4조(신청기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 및 검정의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조(시험등의 업무처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의 의뢰신청을 받은 진흥원장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

①진흥원장은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등을 수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기계·기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기구를 제공받은 진흥원장은 시험등이 끝난 즉시 기계·기구를 의뢰자에게 찾아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조(시험등의 거절) ①시험등의 의뢰를 받은 진흥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등을 거절할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분석.....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신청기간)

분석.....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시험등의 업무처리절차).....

...기술원장.....

제6조(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

①기술원장... 기술원.....

②.....

.....기술원장.....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시험등의 거절) ①.....

.....기술원장.....

1. 시험등에 인력 및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진흥원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생략)
 3.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 또는 의뢰자가 제공한 기계 기구 등으로써 시험등을 할 수 없을 때
 4. (생략)
- ②진흥원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시험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과 함께 대상물품을 찾아가도록 의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통지) 진흥원장은 시험등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 평가후 10일 이내에, 분석 및 검정의 경우에는 분석 및 검정이 끝난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성적증명서 발급) ①시험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장은 당해 시험등을 의뢰한 자에게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의 성적증명서를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등을 의뢰한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술원.....
.....
2. (현행과 같음)
3. 기술원.....
.....
.....
4. (현행과 같음)
- ②기술원장.....
.....
.....

제8조(결과통지) 기술원장
.....
.....
.....
.....
.....
.....
.....
.....
.....
.....
.....
.....
.....
.....
.....
.....
.....

제9조(성적증명서 발급) ①.....
.....
.....
.....
.....
.....
.....
.....
.....
.....
.....
.....
.....
.....
.....
.....

②기술원장.....
.....
.....
.....
.....
.....
.....
.....
.....

제10조(시험등의 결과표시) (생략)			제10조(시험등의 결과표시) (현행과 같음)		
제11조(수수료 및 시험등 경비) ①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시험의뢰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u>분석 및 검정</u> 의뢰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및 시험등 경비)① <u>분석</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수수료의 면제) (생략)			제12조(수수료의 면제) (현행과 같음)		
[별표1] 시험· <u>분석 및 검정</u> 업무 처리절차		 <u>및 분석</u>		
구분	신청인	처리기관 <u>농촌진흥원</u>	구분	신청인	처리기관 <u>농업기술원</u>
<u>분석(검정) 실제 소요시간</u> <u>분석(검정)완료 후 즉시</u>			<u>분석</u> <u>분석</u>		
[별표2] 시험의뢰 및 <u>분석·검정</u> 수수료 2. <u>분석 및 검정</u> 의뢰 수수료		 <u>분석</u> 2. <u>분석</u>		
[별표 3] (생략)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input type="checkbox"/> 시험			<input type="checkbox"/> 시험		
<input type="checkbox"/> 분석 의뢰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분석 의뢰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검정			<삭제>		
충청북도농촌진흥원 시험· <u>분석 및</u>		 <u>농업기술원</u> <u>및 분석</u>		
<u>검정</u> 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				
하여 시험(<u>분석,검정</u>)의뢰를 다음과		(<u>분석</u>).....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북도농촌진흥원장 귀하		 <u>농업기술원장</u>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구분	신청인	처리기관 농촌진흥원	구분	신청인	처리기관 농업기술원
<p><u>분석(검정) 실제 소요시간</u> <u>분석(검정)완료 후 즉시</u></p> <p>[별지 제2호 서식] <input type="checkbox"/> 시험 <input type="checkbox"/> 분석 의뢰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검정</p> <p>충청북도농촌진흥원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검정)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 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충청북도농촌진흥원장 귀하</p>			<p><u>분석</u></p> <p><u>분석</u></p> <p>.....</p> <p><input type="checkbox"/> 시험 <input type="checkbox"/> 분석 의뢰 신청서 <삭제> <u>농업기술원</u> ...<u>및분석</u>.....</p> <p>.....</p> <p>.....(<u>분석</u>).....</p> <p>.....</p> <p style="text-align: right;">..... <u>농업기술원장</u></p>		
<p>[별지 제3호 서식] <input type="checkbox"/> 시험 <input type="checkbox"/> 분석 의뢰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검정</p> <p>충청북도농촌진흥원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검정)성적서를 발급받고자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북도농촌진흥원장 귀하</p>			<p>.....</p> <p><input type="checkbox"/> 시험 <input type="checkbox"/> 분석 의뢰 신청서 <삭제> <u>농업기술원</u> ...<u>및분석</u>.....</p> <p>.....</p> <p>.....(<u>분석</u>).....</p> <p>.....</p> <p style="text-align: right;">..... <u>농업기술원장</u></p>		
<p>첨부서류: 신청인이 타인일 경우 시험 (<u>분석,검정</u>)의뢰인의 동의서 1부</p>			<p>.....</p> <p>(<u>분석</u>).....</p>		

관련법규(부분발췌)

○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농림부령)

[농림부령 제1,254호 1997. 3. 18전문개정]

[농림부령 제1,297호 1998. 12. 4전문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라 함은 물질의 성질·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시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이라 함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검정”이라 함은 농업용 기자재의 구조·성능 및 안전성을 조사·측정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